##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77

발의연월일: 2020. 9. 15.

발 의 자:전용기·서삼석·장경태

이동주 • 이원욱 • 허 영

김수흥 • 임오경 • 최혜영

박용진 • 권칠승 • 박 정

고영인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산업은 25만대의 차량이 면허되어 공로여객 수송의 38%를 담당하며 30만 종사원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공공 교통수단으로 사회적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있음.

한편 장기적인 경기침체, 코로나19 대유행 지속 및 택시 수요공급불균형(5만대 과잉공급)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과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하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 감차보상으로, 100분의 4에 해당하 는 금액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가가치세 100분의 99의 경감규정의 일몰기간이 2021.12.31.

부로 종료되어 지급기간을 2024.12.31.까지 3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이용자의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	
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	
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u>2021</u>	<u>2024</u>
<u>년 12월 31일</u> 이전에 끝나는	<u>년 12월 31일</u>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